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응시연령 상한 연장)”을 “(채용 시 우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임금에 포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

1. 근무경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산입하여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근무경력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에서는 수당의 지급 등을 통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보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재산정한 근무경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근무경력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근무경력으로 부여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경력 산정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생략) <u><신 설></u>	제19조(채용 시 우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취업 지원 실시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임금에 포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 1. 근무경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임금체계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산입하여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근무경력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에서는 수당의 지급 등을 통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보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재산정한 근무경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근무경력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근무경력으로 부여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u><신 설></u>	
<u><신 설></u>	

	<u>사항 외에 근무경력 산정기준,</u> <u>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u> <u>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u> <u>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u> <u>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717